



2026년 2월 월간 법령 뉴스레터

제1부: 세금계산서·증빙 관련 법령 정책

1. 시행규칙 121/2025/TT-BTC — 수출입 재화 통관 절차에 관한 시행규칙 38/2015/TT-BTC의 일부 개정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6.02.01)

2026년 2월 1일부터 적용되는 수출 재화의 통관 서류

이에 따라, 시행규칙 38/2015/TT-BTC 제16조의 수출 재화 통관 서류는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1) 세관 신고서;

(2)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상업송장 또는 이에 상응하는 가치를 지닌 증빙.

2020년 10월 19일자 시행령 123/2020/NĐ-CP 제8조 2a항(2025년 3월 20일자 시행령 70/2025/NĐ-CP 제1조 제5항으로 개정·보완)의 규정에 따라 상업송장이 세관 신고 시점 이전에 전자 형태로 발행된 경우, 세관 신고인은 통관 절차 수행 시 이를 세관 당국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3) 법령 규정에 따른 관할기관의 수출허가서 또는 수출 허용 문서(이하 ‘수출허가서’);

(4) 검사 면제 통보서 또는 전문 분야 검사 결과 통보서 또는 법령에 따른 기타 증빙(이하 ‘전문검사증명서’);

(5) 투자 관련 법령에 따라 조직·개인이 재화 수출 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증빙;

(6) 위 (3), (4), (5)의 증빙이 요구되는 재화의 수출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7) 베트남 내 주재하지 않는 외국 상인이 수출권을 행사하여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산업통상부가 발급한 베트남 내 비주재 외국 상인의 수출권 등록증명서;

(8) 외국인투자기업이 수출권을 행사하는 경우: 수출권이 등록된 외국인투자 상인의 재화 매매 및 재화 매매 관련 활동에 관한 투자증명서. 투자증명서 발급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증빙을 제출합니다. 동일한 세관 기관에서 통관 절차를 수행하는 경우, 세관 신고인은 (7), (8)의 증빙을 최초 통관 시 1회만 제출하면 됩니다.

제2부: 세금 관련 법령 정책

1. 시행령 373/2025/NĐ-CP — 2019년 세금관리법 시행령 126/2020/NĐ-CP의 일부 조항 개정·보완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2.14)

2026년 2월 14일부터 적용되는 부가가치세·개인소득세의 분기별 신고 기준

시행령 373/2025/NĐ-CP 제1조, 제9조는 시행령 126/2020/NĐ-CP 제9조를 개정·보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2월 14일부터 부가가치세 및 개인소득세의 분기별 신고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분기별 부가가치세 신고 적용 대상:

+ 시행령 126/2020/NĐ-CP 제8조 제1항 a호에 규정된 월별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납세자로서, 직전 연도의 재화 판매 및 서비스 제공 총매출액이 500억 동 이하인 경우 분기별 부가가치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재화 판매·서비스 제공 매출액은 역년 내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총매출액으로 확정됩니다.

+ 납세자가 종속 단위·사업장에 대하여 본사에서 집중 신고하는 경우, 재화 판매·서비스 제공 매출액에는 종속 단위·사업장의 매출액이 포함됩니다.

+ 신규로 활동·사업을 개시한 납세자는 분기별 부가가치세 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생산·경영이 12개월을 충족한 후에는, 12개월을 충족한 연도의 다음 역년부터 직전 역년(12개월 충족)의 매출액 수준을 근거로 월별 또는 분기별 과세기간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 시행령 126/2020/NĐ-CP 제8조 제1항 a호에 규정된 월별 개인소득세 신고 대상 납세자가 분기별 부가가치세 신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분기별 개인소득세 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분기별 신고 대상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여 규정에 따라 신고할 책임이 있습니다.

- 분기별 신고 기준을 충족하는 납세자는 역년 전체에 걸쳐 안정적으로 월별 또는 분기별 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월별로 신고 중인 납세자가 분기별 신고 요건을 충족하여 분기별 신고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본 시행령에 첨부된 부록 I에 규정된 과세기간 변경 요청 문서를 분기별 신고를 개시하는 연도의 1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이 지나도록 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납세자는 역년 전체에 걸쳐 월별 신고를 계속 수행합니다.

분기별 신고를 하였으나 분기별 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납세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납세자가 분기별 신고 요건 미충족을 스스로 발견한 경우, 다음 분기의 첫 달부터 월별 신고를 수행하고, 이전 분기들의 월별 신고 서류를 다시 제출하며, 규정에 따라 지연납부 이자를 계산해야 합니다.
- 세무서가 납세자의 분기별 신고 요건 미충족을 발견한 경우, 세무서는 다음 분기의 첫 달부터 월별 신고를 하도록 요구하는 문서를 발행하고, 납세자는 이전 분기들의 월별 신고 서류를 다시 제출하며 규정에 따라 지연납부 이자를 계산합니다. 다만 세무서가 납세자 사업장 현장 검사를 통해 발견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납세자는 세무서의 요청 문서에 따라 월별 신고를 수행하고 월별 신고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 과세기간 변경으로 인해 다시 제출해야 하는 과세기간들의 신고 서류에 대해서는 신고 서류 지연 제출에 관한 행정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시 제출된 월별 신고 서류는 기제출된 분기별 신고 서류를 대체하는 서류로 확정됩니다.

시행령 373/2025/ND-CP 제3조는 두 곳 이상에서 원천징수 대상 급여·임금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개인의 결산신고 서류 제출에 관한 시행령 126/2020/ND-CP 제11조 제8항 b.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보완하였습니다:

두 곳 이상의 지급 조직에서 원천징수 대상 급여·임금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개인은 연중 최대 소득을 지급한 조직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결산신고 서류를 제출합니다.

연중 최대 소득원이 여러 곳이고 그 소득이 서로 동일한 경우, 개인은 해당 최대 소득원을 지급하는 조직들을 관할하는 세무서 중 한 곳에 결산 서류를 제출합니다.

개인이 위 규정과 다르게 개인소득세 결산신고 서류를 제출한 경우, 서류를 접수한 세무서는 세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상 정보를 근거로 소득 지급 조직 관할 세무서로 서류 이관을 지원하여 법령에 따라 개인소득세 결산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2. 시행령 340/2025/ND-CP — 통화·은행 분야 행정처벌 규정 (공포일: 2025.12.25 | 시행일: 2026.02.09)

2026년 2월 9일부터, 명의도용 결제계좌 개설 시 최대 2억 5천만 동의 벌금 부과 가능

구체적으로, 시행령 340/2025/ND-CP 제30조 제7항은 다음 위반 행위 중 하나에 대해 2억 동 이상 2억 5천만 동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 결제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전자 데이터에 침입하거나 침입을 시도하고, 데이터를 절취·파괴하거나 무단 변경하는 행위; 형사책임 추궁 수준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컴퓨터 네트워크 시스템의 오류를 악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

- 익명 또는 명의도용 결제계좌를 개설하거나 유지하는 행위;
- 결제계좌, 결제수단, 결제서비스를 도박, 도박 조직, 사기, 기망, 불법 영업, 가공 결제 거래 및 기타 법령 위반 행위에 사용·악용하는 행위를 실행, 조직 실행 또는 조장하는 행위;
- 형사책임 추궁 수준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결제계좌 정보를 절취하거나 절취를 공모하는 행위;
- 결제수납 가맹점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하는 행위.

현행 규정상, 시행령 88/2019/ND-CP 제26조 제7항 b호(시행령 143/2021/ND-CP 제1조 제15항 d호로 개정)는 익명·명의도용 결제계좌 개설 또는 유지 행위에 대해 1억 동 이상 1억 5천만 동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 2월 9일부터 익명·명의도용 결제계좌 개설 또는 유지 행위에 대한 벌금 수준이 최대 2억 5천만 동으로 공식 상향됩니다.

유의사항: 상기 벌금 수준은 개인에게 적용되는 수준이며, 동일한 행정 위반 행위에 대해 조직에 적용되는 벌금은 개인 적용 벌금의 2배입니다.

아울러 위반 대상은 시행령 340/2025/ND-CP 제30조 제10항 a호에 따라 위반 행위로 취득한 불법 이익을 국가예산에 납부해야 합니다.

제3부: 임금 · 보험 · 노동 관련 법령 정책

1. 시행규칙 60/2025/TT-BYT — 사회보험 적용 직업병 및 직업병으로 인한 노동능력 감소율의 진단·감정 지침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2.15)

2026년 2월 15일부터 적용되는 사회보험 적용 직업병 목록

이에 따라, 시행규칙 60/2025/TT-BYT 제3조는 사회보험 적용 직업병 목록 및 직업병으로 인한 노동능력 감소율의 진단·감정 지침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 직업성 규폐증 및 노동능력 감소율의 진단·감정 지침: 시행규칙 60/2025/TT-BYT 첨부 부록 I에 규정.
- 직업성 석면폐증 및 노동능력 감소율의 진단·감정 지침: 시행규칙 60/2025/TT-BYT 첨부 부록 II에 규정.
- 직업성 면폐증 및 노동능력 감소율의 진단·감정 지침: 시행규칙 60/2025/TT-BYT 첨부 부록 III에 규정.

4. 직업성 활석폐증 및 노동능력 감소율의 진단·감정 지침: 시행규칙 60/2025/TT-BYT 첨부 부록 IV에 규정.
5. 직업성 탄광부 진폐증 및 노동능력 감소율의 진단·감정 지침: 시행규칙 60/2025/TT-BYT 첨부 부록 V에 규정.
6. 직업성 만성 기관지염 및 노동능력 감소율의 진단·감정 지침: 시행규칙 60/2025/TT-BYT 첨부 부록 VI에 규정.
7. 직업성 천식 및 노동능력 감소율의 진단·감정 지침: 시행규칙 60/2025/TT-BYT 첨부 부록 VII에 규정.
8. 직업성 납 중독 및 노동능력 감소율의 진단·감정 지침: 시행규칙 60/2025/TT-BYT 첨부 부록 VIII에 규정.
9. 벤젠 및 동족체에 의한 직업성 중독 및 노동능력 감소율의 진단·감정 지침: 시행규칙 60/2025/TT-BYT 첨부 부록 IX에 규정.
10. 직업성 수은 중독 및 노동능력 감소율의 진단·감정 지침: 시행규칙 60/2025/TT-BYT 첨부 부록 X에 규정.
11. 직업성 망간 중독 및 노동능력 감소율의 진단·감정 지침: 시행규칙 60/2025/TT-BYT 첨부 부록 XI에 규정.
12. 직업성 2,4,6-트리니트로톨루엔(TNT) 중독 및 노동능력 감소율의 진단·감정 지침: 시행규칙 60/2025/TT-BYT 첨부 부록 XII에 규정.
13. 직업성 비소 중독 및 노동능력 감소율의 진단·감정 지침: 시행규칙 60/2025/TT-BYT 첨부 부록 XIII에 규정.
14. 직업성 농약(유기인계 및 카바메이트계) 중독 및 노동능력 감소율의 진단·감정 지침: 시행규칙 60/2025/TT-BYT 첨부 부록 XIV에 규정.
15. 직업성 니코틴 중독 및 노동능력 감소율의 진단·감정 지침: 시행규칙 60/2025/TT-BYT 첨부 부록 XV에 규정.
16. 직업성 일산화탄소 중독 및 노동능력 감소율의 진단·감정 지침: 시행규칙 60/2025/TT-BYT 첨부 부록 XVI에 규정.
17. 직업성 카드뮴 중독 및 노동능력 감소율의 진단·감정 지침: 시행규칙 60/2025/TT-BYT 첨부 부록 XVII에 규정.
18. 소음에 의한 직업성 난청 및 노동능력 감소율의 진단·감정 지침: 시행규칙 60/2025/TT-BYT 첨부 부록 XVIII에 규정.
19. 직업성 감압병 및 노동능력 감소율의 진단·감정 지침: 시행규칙 60/2025/TT-BYT 첨부 부록 XIX에 규정.
20. 전신 진동에 의한 직업병 및 노동능력 감소율의 진단·감정 지침: 시행규칙 60/2025/TT-BYT 첨부 부록 XX에 규정.

21. 국소 진동에 의한 직업병 및 노동능력 감소율의 진단·감정 지침: 시행규칙 60/2025/TT-BYT 첨부 부록 XXI에 규정.
22. 직업성 방사선 질환 및 노동능력 감소율의 진단·감정 지침: 시행규칙 60/2025/TT-BYT 첨부 부록 XXII에 규정.
23. 직업성 백내장 및 노동능력 감소율의 진단·감정 지침: 시행규칙 60/2025/TT-BYT 첨부 부록 XXIII에 규정.
24. 직업성 유성좌창(oil acne) 및 노동능력 감소율의 진단·감정 지침: 시행규칙 60/2025/TT-BYT 첨부 부록 XXIV에 규정.
25. 직업성 피부 색소침착증 및 노동능력 감소율의 진단·감정 지침: 시행규칙 60/2025/TT-BYT 첨부 부록 XXV에 규정.
26. 크롬에 의한 직업성 접촉성 피부염 및 노동능력 감소율의 진단·감정 지침: 시행규칙 60/2025/TT-BYT 첨부 부록 XXVI에 규정.
27. 장기간 습하고 차가운 환경 접촉으로 인한 직업성 피부질환 및 노동능력 감소율의 진단·감정 지침: 시행규칙 60/2025/TT-BYT 첨부 부록 XXVII에 규정.
28. 천연고무 및 고무 첨가 화학물질 접촉으로 인한 직업성 피부질환 및 노동능력 감소율의 진단·감정 지침: 시행규칙 60/2025/TT-BYT 첨부 부록 XXVIII에 규정.
29. 직업성 랩토스피라증 및 노동능력 감소율의 진단·감정 지침: 시행규칙 60/2025/TT-BYT 첨부 부록 XXIX에 규정.
30. 직업성 B형 바이러스 감염 및 노동능력 감소율의 진단·감정 지침: 시행규칙 60/2025/TT-BYT 첨부 부록 XXX에 규정.
31. 직업성 결핵 및 노동능력 감소율의 진단·감정 지침: 시행규칙 60/2025/TT-BYT 첨부 부록 XXXI에 규정.
32. 직업상 사고·위험으로 인한 HIV 감염 및 노동능력 감소율의 진단·감정 지침: 시행규칙 60/2025/TT-BYT 첨부 부록 XXXII에 규정.
33. 직업성 C형 바이러스 감염 및 노동능력 감소율의 진단·감정 지침: 시행규칙 60/2025/TT-BYT 첨부 부록 XXXIII에 규정.
34. 직업성 중피종 및 노동능력 감소율의 진단·감정 지침: 시행규칙 60/2025/TT-BYT 첨부 부록 XXXIV에 규정.
3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직업성 급성 호흡기 질환(COVID-19) 및 노동능력 감소율의 진단·감정 지침: 시행규칙 60/2025/TT-BYT 첨부 부록 XXXV에 규정.

제4부: 기업 · 투자 관련 법령 정책

1. 시행규칙 65/2025/TT-BCT — 보조산업 발전에 관한 시행령 111/2015/ND-CP의 일부 조항을 개정·보완한 시행령 205/2025/ND-CP의 일부 조항 시행 세부 규정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2.16)

우선 발전 대상 보조산업 제품 생산 프로젝트의 시행 보고서 종류

시행규칙 65/2025/TT-BCT는 보조산업 발전에 관한 시행령 111/2015/ND-CP의 일부 조항을 개정·보완한 시행령 205/2025/ND-CP의 일부 조항 시행을 세부적으로 규정합니다. 시행규칙 65/2025/TT-BCT는 2025년 7월 14일자 시행령 205/2025/ND-CP에 규정된 우선 발전 보조산업 제품 목록에 속하는 제품 생산 프로젝트를 보유하고 관할기관으로부터 우대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에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보조산업 발전 관련 각종 보고서에 대한 세부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대확인서가 발급된 보조산업 제품 생산 프로젝트 시행 현황 보고서: 관할기관으로부터 우대확인서를 발급받은 우선 발전 보조산업 제품 목록상 제품 생산 프로젝트의 시행 현황에 관한 기업의 정기 보고서로서, 우대확인서 발급 다음 연도부터 매년 4월 15일 이전에 정기적으로 작성하여 우대확인서 발급 관할기관에 제출합니다.
- 우대 사후검사 지원 보고서: 우대 혜택 확인 심사를 위한 규정·요건 준수에 관한 보고서로서, 관할기관으로부터 우대 사후검사 통보를 받은 때에 작성합니다.
- 기업은 상기 두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의 정확성·진실성을 확약하며 그 내용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부담합니다.
- 두 보고서의 서식은 시행규칙 65/2025/TT-BCT에 첨부된 부록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의사항:

본 뉴스레터는 참고용 자료입니다. 기업 또는 개인께서는 법령 전문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절차 및 서식을 정확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